

6. 建築法施行令中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第1994-98號 1994. 4. 8

1. 주요내용

- 가. 지금까지는 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이내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건축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 구역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(안 제8조제1항제2호).
- 나. 도시계획구역등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11조제2항제1호).
- 다. 준공업지역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.
- 라.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공사도중 단열공사가 50%진도에 다다르면 시·군·구의 중간 검사를 받아야만 공사를 계속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단열공사의 진도에 따른 중간 검사제도는 폐지함(안 제16조제2항제1호 나목).
- 마.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거나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대지의 여건상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대지 안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27조제1항).
- 바. 기계식주차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높이 6미터이하인 것에 한하여 공작물로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8미터이하인 것가지 공작물로 적용하도록 함(안 제118조제1항).

사.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등에서 1994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함께 설치하는 시설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기까지 계속 건축이 가능하도록 19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함(안 부칙제5조제2항).

2.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건축허가) ①법 제8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”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.	제8조(건축허가) ①법 제8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”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 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 로부터 각각 양측 3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중심선 으로부터 <u>양측 100미터이내의</u> 구역. 다 만, 고속국도·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시 장등이 지정·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. <u>양측 50미터이내의</u>
3. (생략)
②·③ (생략)
제11조(건축신고) ①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”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	②·③ (현행과 같음)
1. <u>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하인</u> <u>단독주택</u>	제11조(건축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 ②

	1. <u>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(단독주</u> <u>택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)이하인 건축</u> <u>물</u>

현 행	개 정 안
<p>나. 단열시공이 전체공정의 50퍼센트 공정에 달하였을 때. 다만, 단열재 가 사용된 벽·기둥·바닥·보·지 붕 또는 주계단을 조립식으로 건축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~⑤ (생략)</p> <p>제27조(대지안의 조경)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(읍·면의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)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나. <삭제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(대지안의 조경) ①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. 다만, 읍·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 하는 건축물·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과 기타 대지에 염 분이 함유되어 있어 조경에 필요한 조치 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건축조 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118조(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) ①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축조(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에 관하여는 법 제9조·법 제13조제1항·법 제16조제2항·법 제18조</p>	<p>제118조(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)</p> <p>.....</p>

현 행	개 정 안
(착공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제1항후단을 제외한다) · 법 제25조 · 법 제26조제1항 · 법 제30조제4항 · 법 제31조 · 법 제34조 · 법 제37조 · 법 제38조 · 법 제45조제2항(건축물의 형태 · 색채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) · <u>법 제47조</u> · 법 제50조 · 법 제51조 · 법 제53조 · 법 제70조 · 법 제73조 · 법 제74조 · 법 제76조 · 법 제78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법 제45조제2항의 준용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, 법 제53조의 준용은 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준용한다. <u>법 제47조(제8호의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를 제외한다)</u>
1.~7. (생략)	1.~7. (현행과 같음)
8. <u>높이 6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풀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</u>	8. <u>높이 8미터이하의</u>
9. (생략)	9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부 칙	부 칙
제5조(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) ① (생략) ② 별표2 내지 별표7 및 별표 9 내지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	제5조(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

현 행	개 정 안
한 용도지역안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는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개정 규정 또는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용 도의 건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 및 건축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<u>1994년</u> <u>5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/u> <u>1994년</u> <u>5월31일(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</u> <u>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 시설안에 설치</u> <u>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</u> <u>일)</u>
<u>[별표 2]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65조제1항제1호 관 련)</u>	<u>[별표2]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65조제1항제1호 관 련)</u>
1. (생략) 2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.~마. (생략) <u>〈신설〉</u>	1. (현행과 같음) 2. 가.~마. (현행과 같음) 바. 자동차관련시설(너비 12미터 이상 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당해 대지 로부터 500미터이내에 주차장이 허용 되는 지역이 없는 곳에 건축하는 주 차장에 한한다.)
<u>[별표 9]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65조제1항제8호 관 련)</u>	<u>[별표 9]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65조제1항제8호 관 련)</u>
1. (생략) 2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	1. (현행과 같음) 2.

현 행	개 정 안
가.~다. (생략) <u>〈신설〉</u>	가.~다. (현행과 같음) 라. 판매시설(당해 전용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)
라. 군사시설	마.
마. 기숙사(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)	바.
바. 의료시설	사.
사. 전시시설(산업전시장·박람회장에 한한다)
아. 방송·통신시설	아.
[별표 10]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65조제1항제9호 관 련)	[별표 10]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65조제1항제9호 관 련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	2.
가.~사. (생략)	가.~사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설〉</u>	아. 판매시설(당해 일반공업지역의 공 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 설에 한한다)
아. 방송·통신시설	자.
자. 군사시설	차.
차. 교정시설	카.
카. 청소년수련시설	타.
타. 동물관련시설	파.
파. 의료시설	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[별표 11]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65조제1항제10호 관 련) 1. (생략) 2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.~라. (생략) 마. 교육연구시설(국민학교·중학교· 고등학교·교육원·기술계학원·직업 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) 바.~아. (생략) 자. 판매시설(농·축·수산물판매시설 에 한한다)	[별표 11]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65조제1항제10호 관 련) 1. (현행과 같음) 2. 가.~라. (현행과 같음) 마.직업 훈련소·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..... 바.~아. (현행과 같음) 자.시설 과 당해 준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 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 다) 차.~버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
[별표 15]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액 (제121조 관련)	[별표 15]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액 (제121조 관련)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위반건축물</th> <th>해당법 조문(건 축법)</th> <th>이행강제금의 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 고를 하지 아니</td> <td>법 제14 조</td> <td>과세시가표준액 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반건축물	해당법 조문(건 축법)	이행강제금의 금액	1.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 고를 하지 아니	법 제14 조	과세시가표준액 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위반건축물</th> <th>해당법 조문(건 축법)</th> <th>이행강제금의 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〈삭제〉</td> <td>〈삭제〉</td> <td>〈삭제〉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반건축물	해당법 조문(건 축법)	이행강제금의 금액	〈삭제〉	〈삭제〉	〈삭제〉
위반건축물	해당법 조문(건 축법)	이행강제금의 금액											
1.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 고를 하지 아니	법 제14 조	과세시가표준액 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											
위반건축물	해당법 조문(건 축법)	이행강제금의 금액											
〈삭제〉	〈삭제〉	〈삭제〉											

현행		개정안	
위반건축물	해당법 조문(건 축법)	이행 강제금의 금액	해당법 조문(건 축법)
하고 용도를변 경한 건축물			
2.~23. (생략)	(생 략)		2.~23. (현행 과 같음)
			(현행과 같음)

'94년은 성실시공 元年의 해